

국내주식 소수단위매매거래 설정약관 신규조문대비표 (2023.10.12개정)

| 현행 | 개정 | 비고 |
|--|---|---|
| <p>제19조(관할법원)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「민사소송법」이 정한 바에 따른다.</p> | <p>제23조(관할법원)</p> <p>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「민사소송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경우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,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민사소송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| <p>[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] 개정에 따른</p> <p>①항 자구수정, ②항 신설</p> |